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핀플루언서에 대한 보유 가상자산 공개 의무 신설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1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이하 “핀플루언서”)로 하여금 수령한 대가 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u>매를 유인하는 행위</u> 제19조(벌칙) ①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핀플루언서(finfluencer)”란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와 투자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함.

○ 최근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핀플루언서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¹⁾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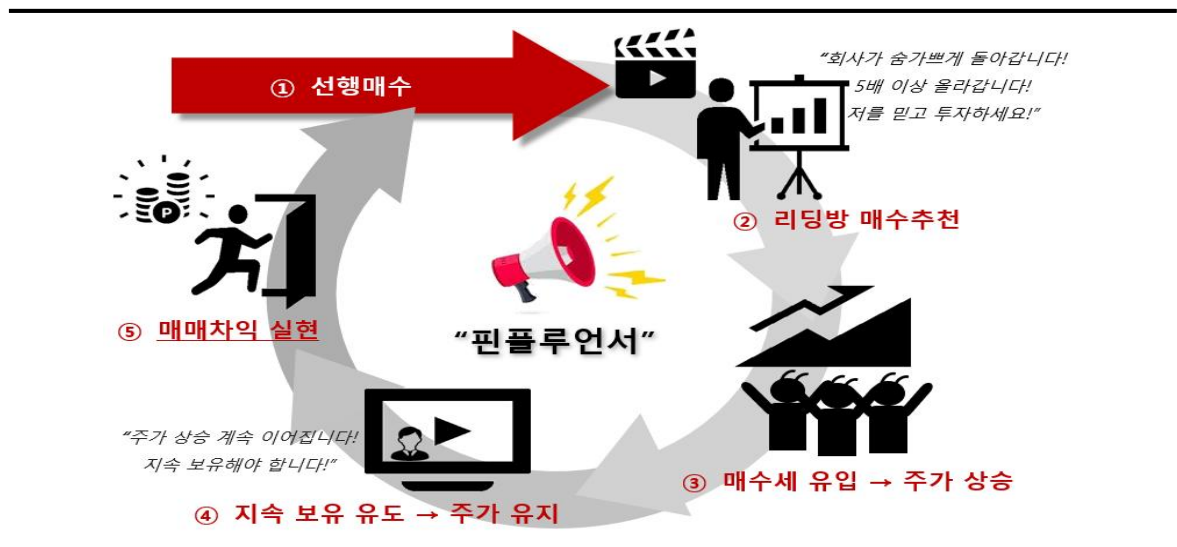
1)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미국 투자자 6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반면, 금융 전문가를 활용한 사람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Z세대가 얻는 금융정보는 핀플루언서가 주도할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²⁾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 매매를 하거나 관련 테마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금융당국이 다수 적발·조치한 바 있음.³⁾

- 예를 들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자가 투자경력 및 수익률을 허위·과장하여 회원을 유치한 후 특정 종목을 소개하기 직전에 주식을 집중매수하고,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한편, 본인이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 안내하면서도 이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한 사례가 있음.

[그림]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것이며, 금융정보는 소셜미디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함.

2) 안유미, “최근 핀플루언서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감독 강화 추세”, 「자본시장포커스(2024-2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12. 16.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 2026. 3.

□ 그런데, 현행법은 핀플루언서에 대한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지 않아 위에서 사례로 든 선행매매 행위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핀플루언서로 하여금 자신이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사례로 든 선행매매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나, 개인이 수령한 대가나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핀플루언서의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규제대상이 되는 핀플루언서를 ①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가상자산의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판단 등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또는 ②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의 의도가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되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 가상자산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⁴⁾)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의무 위반의 위법성 및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이 허위·누락되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는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자본시장과 금융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사투자자문업자⁵⁾도 이른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선행매매 등의 우려가 있으나 자산공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⁶⁾, 실효성 있는 집행⁷⁾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08호, 2026. 2. 26.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26. 2. 27.)되어 계류 중임.

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래소 밖의 개인지갑(콜드월렛)에 재산을 은닉하여 개인기반(P2P) 거래를 하거나, 규율이 느슨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공적 감시가 어렵고 재산공개 의무 부과 실효성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